

부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365
의 결	95. 3. 28
년 월 일	(제36회)

제출년월일 : 1994. 3. 17

제 출 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94. 7. 1자로 부천시도축장(원미구 춘의동 66-1소재)이 폐쇄됨에 따라 관영도축장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제정되었던 부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의 기능 상실로 조례를 폐지코자 함

☐ 주요골자

“동조례 폐지”

부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부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심사경과

1. 심사일정

가. 제 안 자 : 부천시장

나. 회부일자 : 95. 3. 17

다. 상정일자 : 95. 3. 24

라. 의결일자 : 95. 3. 24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설명자 : 지역경제과장

나. 내 용

○ 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 ⇒ 일반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

(제3조제2항제3호)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없 음	없 음

4. 토론요지

가. 반대토론 : 없 음

나. 찬성토론 : 없 음

5. 수정안 내용 : 없 음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66
의 결	95. 3. 28
년 월 일	(제36회)

제출년월일 : 95. 3. 17

제 출 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부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의 개정으로 수수료명칭이 변경되었기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 → 일반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제3조제2항제3호)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일반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기능) ①(생략)	제3조(기능) ①(현행과 같음)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1 ~ 2(생략)	1 ~ 2(현행과 같음)
3. <u>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u>	3. <u>일반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u>
4 ~ 5(생략)	4 ~ 5(현행과 같음)
③(생략)	③(현행과 같음)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심사경과

1. 심사일정

가. 제안자 : 부천시장

나. 회부일자 : 95. 3. 17

다. 상정일자 : 95. 3. 24

라. 의결일자 : 95. 3. 24